

#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674호 2020. 7. 2.(목)

##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38호 상남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1
- 사천시 고시 제24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 고시 ----- 20

##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845호 어업면허 사항 공고 ----- 21

##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855호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2
- 사천시 공고 제858호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3
- 사천시 공고 제859호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3
- 사천시 공고 제862호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4
- 사천시 공고 제863호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
- 사천시 공고 제866호 사천시 아·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66

회 람										
--------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사천시 고시 제2020-238호

## 상남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19-147(2019.6.20.)호로 시행계획 변경 고시한 “상남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내용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7월 2일

### 사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상남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2. 사업의 목적 : 일반 농촌지역에 권역의 특성에 맞도록 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주민역량강화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생활터전유지 및 쾌적한 농촌 정주공간 조성
3. 사업비 : 4,900백만원(국비70%, 지방비30%)
4. 주요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분야	세 부 사 업	사업비		비고
		1단계	2단계	
합 계		4,792	108	
기초생활 기반확충	와룡교류센터 조성	1,263		
	주민복지시설(중천마을 외 2개소)	597		
	사촌마을 진입로 정비 및 외1개소	484		
	소 계	2,344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사업분야	세 부 사 업	사업비		비고
		1단계	2단계	
지 역 경관개선	마을숲 정비(우천숲 외 4개소)	1,430	108	
	마을 소공원 조성	65		
	소 계	1,495		
지 역 역량강화	교육, 홍보마케팅, 권역컨설팅, 정보화 구축, 마을경영지원 등	283		
부대비용	설계비, 공사감리비	670		

5.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도시재생과장)

6. 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사천지사장)

7.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 초 : 1단계 2013년 1월 ~ 2019년 2월 28일

2단계 2019년 3월 ~ 2020년 6월 30일

○ 변 경 : 1단계 2013년 1월 ~ 2019년 2월 28일

2단계 2019년 3월 ~ 2021년 6월 30일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

가. 토지 조서

구 분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 <sup>2</sup>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면	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38)						21,951	21,951	-						

**1) 와룡교류센터**

1	사남	가천	44-1	44-1	답	995	995	-	사천시					
2	사남	가천	44-25	44-25	답	1,007	1,007	-	사천시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구 분	소재지		지번		지 목	편입면적(m <sup>2</sup>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면	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용 내	

## 2) 가천용소자연발생유원지 정비

3	사남	가천	511	511	천	1,733	1,733	-	국 (국토부)					
4	사남	가천	6	6	대지	448	448	-	김수권	사천시 사남면 사남로286-20				
5	사남	가천	506	506	도	430	430	-	국 (국토부)					
6	사남	가천	51	51	구	507	507	-	농림부					
7	사남	가천	511-1	511-1	천	52	52	-	국 (국토부)					
8	사남	종천	657	657	천	2,679	2,679	-	국 (국토부)					
9	사남	우천	1446-65	1446-65	천	2,106	2,106	-	국 (국토부)					
10	사남	우천	1444-2	1444-2	도	38	38	-	국 (국토부)					
11	사남	우천	1444	1444	도	119	119	-	국 (국토부)					
12	사남	종천	617	617	임	501	501	-	최*순	사천시 사남면 사남로 *				

구 분	소재지		지번		지 목	편입면적(m <sup>2</sup>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면	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변경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용 내	

## 3) 종천마을 회관

13	사남	종천	707	707	답	1,215	1,215	-	최*철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				사용
----	----	----	-----	-----	---	-------	-------	---	-----	---------------	--	--	--	----

## 4) 소산마을 회관

14	사남	종천	69-2	69-2	도	225	225	-	소*마*회	사천시 사남면 종천리 *				사용
----	----	----	------	------	---	-----	-----	---	-------	---------------	--	--	--	----

## 5) 대산마을 회관

15	사남	사촌	241	241	전	342	342	-	이*환	사천시 사남면 사촌리 *				사용
----	----	----	-----	-----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 6) 사촌마을진입로 정비

16	사남	사촌	산 46-1	산 46-1	도	496	496	-	국 (국토부)					
17	사남	사촌	산 46-2	산 46-2	임	1,090	1,090	-	사천시					
18	사남	사촌	436-1	436-1	도	42	42	-	사천시					
19	사남	사촌	442-1	442-1	도	59	59	-	사천시					
20	사남	사촌	443-1	443-1	도	21	21	-	사천시					
21	사남	사촌	440-1	440-1	도	78	78	-	사천시					
22	사남	사촌	474-17	474-17	대지	271	271	-	사천시					
23	사남	사촌	474-18	474-18	도	56	56	-	사천시					
24	사남	사촌	824	824	도	100	100	-	국 (국토부)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 <sup>2</sup>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면	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용내	
<b>7) 계양마을안길정비</b>														
25	사남	계양	295-1	295-1	전	974	974	-	사천시					
<b>8) 우천 숲 조성</b>														
26	사남	우천	139	385	답	1,210	1,210	-	사천시					
27	사남	우천	140	385-1	답	764	764	-	사천시					
<b>9) 연천 숲 조성</b>														
28	사남	우천	1,503	1,503	답	907	907	-	사천시					
29	사남	우천	1,504	1,504	답	580	580	-	사천시					
<b>10) 능화 숲 조성</b>														
30	사남	우천	534	534	답	839	839	-	사천시					
31	사남	우천	148	148	전	9	9	-	사천시					
<b>11) 진분계숲 조성</b>														
32	사남	계양	383-3	383-3	임	100	100	-	진*계* 을*					사용
33	사남	계양	390-4	390-4	임	200	200	-	진*계* 을*					사용
34	사남	계양	384	384	전	304	304	-	진*계* 을*					사용
35	사남	계양	383-5	383-5	임	150	150	-	진*계* 을*					사용
36	사남	계양	382	382	전	122	122	-	진*계* 을*					사용
37	사남	계양	388	388	답	982	982		사천시					
<b>12) 마을쉼터 조성</b>														
38	사남	사촌	633	633	대	200	200	-	송*새* 을*	사천시 사남면 사촌리 *				사용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 나.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건 세목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유형	구분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1	사남면 가천리	6	건물	1층	근린생활 시설	철근콘크리트 조 슬라브	160.14	m <sup>2</sup>	최*순	사천시 사남면 사남로 *			
2	사남면 가천리	6	건물	2층	주택	조적조 슬라브	149.30	m <sup>2</sup>	"	"			
3	사남면 가천리	6	공작물	1층	가추1	철파이프조 강판지붕	48.00	m <sup>2</sup>	"	"			
4	사남면 가천리	6	건물	1층	창고	판넬조	20.80	m <sup>2</sup>	"	"			
5	사남면 가천리	6	건물	1층	심야 전기 보일러		1	식					
6	사남면 가천리	6	공작물	1층	가추2	철파이프조 강판지붕	3.80	m <sup>2</sup>	"	"			
7	사남면 가천리	6	공작물	1층	가스저장실	판넬조	1.20	m <sup>2</sup>	"	"			
8	사남면 가천리	6	건물	1층	다용도실	샷시조	7.20	m <sup>2</sup>	"	"			
9	사남면 가천리	6	공작물	1층	계단	콘크리트및 화강암깔기	4.80	m <sup>2</sup>	"	"			
10	사남면 가천리	6	공작물	2층	가추3	샷시조 (물탱크포함)	1	식	"	"			
11	사남면 가천리	6	공작물	2층	계단	콘크리트및 화강암깔기	7.20	m <sup>2</sup>	"	"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유형	구분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12	사남면 가천리	6	건물	옥상층	창고	판넬조지붕 판넬지붕	12.00	m <sup>2</sup>	최*순	사천시 사남면 사남로 *			
13	사남면 가천리	6	건물		심야 전기 보일러		1	식	"	"			
14	사남면 가천리	6	공작물	옥상층	물탱크	FRP(대) 철재받침대 포함	1	식	"	"			
15	사남면 가천리	6	건물	1층	근린생활 시설	철근콘크리 트조 슬라브	78.90	m <sup>2</sup>	"	"			
16	사남면 가천리	6	건물	2층	주택	벽돌조 슬라브	58.22	m <sup>2</sup>	"	"			
17	사남면 가천리	6	건물	1층	가추3	철파이프조 강판지붕	27.20	m <sup>2</sup>	"	"			
18	사남면 가천리	6	공작물	1층	계단및 보일러실	콘크리트및 화강암깔기	11.00	m <sup>2</sup>	"	"			
19	사남면 가천리	6	건물	2층	가추4	캐노피	21.84	m <sup>2</sup>	"	"			
20	사남면 가천리	6	영업권	1층	영업권	용소식당	1	식	"	"			
21	사남면 가천리	6	공작물	1층	영업시설	주방시설및 기타영업시 설	1	식	"	"			
22	사남면 가천리	6	공작물	1층	간판	부착형 (5*1.2)	1	식	"	"			
23	사남면 가천리	6	공작물	옥상층	간판	부착형 (8*1.2)	1	식	"	"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유형	구분	물건의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면 적)	단 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소유자	주 소	성명	주소	
24	사남면 가천리	6	수목		연산홍	W:0.5	5	주	최*순	사천시 사남면 사남로 *			
25	사남면 가천리	6	수목		측백나무	H:2,W:1.2	2	주	"	"			
26	사남면 가천리	6	수목		꽃사과	R:15	1	주	"	"			
27	사남면 가천리	6	수목		장미	R:3	1	주	"	"			
28	사남면 가천리	6	수목		밤나무	R:20	1	주	"	"			
29	사남면 가천리	6	수목		감나무	R:15	2	주	"	"			
30	사남면 가천리	6	수목		자두나무	R:20	1	주	"	"			
31	사남면 가천리	6	영업 권		영업권	용소민박	1	식	"	"			
32	사남면 가천리	6	공작 물		영업시설	민박시설 및 기타 영업시설	1	식	"	"			
33	사남면 가천리	6	영업 권		영업권	용소매점	1	식	양*선	사천시 사남면 사남로 *			
34	사남면 가천리	6	공작 물		영업시설	판매시설 및 기타영업시설	1	식	"	"			
35	사남면 중천리 우천리	657, 1444, 1446- 65	수목	1 구역	아카시아	R:30~40	8	주	김*권	사천시 사남면 사남로 *			
36	사남면 중천리 우천리	657, 1444, 1446- 65	수목	1 구역	은행나무	R:50	1	주	"	"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유형	구분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37	사남면 종천리, 우천리	657, 1444, 1446-65	수목	1구역	은행나무	R:40	8	주	김*권	사천시 사남면* 사남로			
38	사남면 종천리, 우천리	657, 1444, 1446-65	수목	1구역	은행나무	R:20	3	주	"	"			
39	사남면 종천리, 우천리	657, 1444, 1446-65	수목	1구역	은행나무	R:10	1	주	"	"			
40	사남면 종천리, 우천리	657, 1444, 1446-65	수목	1구역	느티나무	R:50	1	주	"	"			
41	사남면 종천리, 우천리	657, 1444, 1446-65	수목	1구역	느티나무	R:40	17	주	"	"			
42	사남면 종천리, 우천리	657, 1444, 1446-65	수목	1구역	층층나무	R:40	1	주	"	"			
43	사남면 종천리, 우천리	657, 1444, 1446-65	수목	1구역	느티나무	R:30	2	주	"	"			
44	사남면 종천리, 우천리	657, 1444, 1446-65	수목	1구역	느티나무	R:10	2	주	"	"			
45	사남면 종천리, 우천리	657, 1444, 1446-65	수목	1구역	팽나무	R:50	1	주	"	"			
46	사남면 종천리, 우천리	657, 1444, 1446-65	수목	1구역	팽나무	R:40	5	주	"	"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유형	구분	물건의류	구조및규격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47	사남면 종천리, 우천리	657, 1444, 1446-65	수목	1구역	두층나무	R:20	1	주	김*권	사천시 사남면* 사남로*			
48	사남면 종천리, 우천리	657, 1444, 1446-65	수목	1구역	이팝나무	R:40	1	주	"	"			
49	사남면 종천리, 우천리	657, 1444, 1446-65	수목	1구역	벚나무	R:20	1	주	"	"			
50	사남면 종천리, 우천리	657, 1444, 1446-65	수목	1구역	감나무	R:30	2	주	"	"			
51	사남면 종천리	657	공작물	2구역	조명시설	지주식	1	식	"	"			
52	사남면 종천리	657	수목	2구역	느티나무	R:50	1	주	"	"			
53	사남면 종천리	657	수목	2구역	느티나무	R:40	2	주	"	"			
54	사남면 종천리	657	수목	2구역	팽나무	R:50	2	주	"	"			
55	사남면 종천리	657	수목	2구역	팽나무	R:45	2	주	"	"			
56	사남면 종천리	657	수목	2구역	아카시아	R:50	1	주	"	"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유형	구분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57	사남면 종천리	657	수목	2구역	은행나무	R:40	1	주	김*권	사천시 사남면 사남로*			
58	사남면 종천리	657	수목	2구역	은행나무	R:30	1	주	"	"			
59	사남면 종천리	657	수목	2구역	벚나무	R:80	1	주	"	"			
60	사남면 종천리	657	수목	2구역	벚나무	R:60	3	주	"	"			
61	사남면 종천리	657	수목	2구역	벚나무	R:50	5	주	"	"			
62	사남면 종천리	657	수목	2구역	벚나무	R:20	1	주	"	"			
63	사남면 종천리	657	수목	2구역	플라타너스	R:45	2	주	"	"			
64	사남면 종천리	657	수목	2구역	수양버들	R:40	1	주	"	"			
65	사남면 종천리	657	수목	2구역	오동나무	R:35	2	주	"	"			
66	사남면 종천리	657	수목	2구역	모과나무	R:20	1	주	"	"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유형	구분	물건의류	구조및규격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67	사남면 종천리	657	수목	2 구역	향나무	W:3.0,H:1. 5	1	주	김*권	사천시 사남면로 사남* 사남*			
68	사남면 종천리	657	수목	2 구역	주목	W:2.5,H:1. 3	1	주	"	"			
69	사남면 종천리, 가천리	657, 511	공작물	3 구역	양어장	자연석 (L:25,H:3 W:9)	1	식	"	"			
70	사남면 종천리, 가천리	657, 511	공작물	3 구역	배수관로	콘크리트 관 (L:110m)	1	식	"	"			
71	사남면 종천리, 가천리	657, 511	공작물	3 구역	파고라 (부대시설 포함)	콘크리트 (7*5)	35	m <sup>2</sup>	김*권	사천시 사남면로 사남* 사남*			
72	사남면 종천리, 가천리	657, 511	공작물	3 구역	조명시설		2	식	"	"			
73	사남면 종천리, 가천리	657, 511	수목	3 구역	팽나무	R:60	4	주	"	"			
74	사남면 종천리, 가천리	657, 511	수목	3 구역	팽나무	R:55	5	주	"	"			
75	사남면 종천리, 가천리	657, 511	수목	3 구역	팽나무	R:50	7	주	"	"			
76	사남면 종천리, 가천리	657, 511	수목	3 구역	팽나무	R:40	12	주	"	"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유형	구분	물건의류	구조및규격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77	사남면 종천리, 가천리	657, 511	수목	3구역	팽나무	R:30	2	주	김*권	사천시 사남면 사남로*			
78	사남면 종천리, 가천리	657, 511	수목	3구역	팽나무	R:10	3	주	"	"			
79	사남면 종천리, 가천리	657, 511	수목	3구역	소태나무	R:60	1	주	"	"			
80	사남면 종천리, 가천리	657, 511	수목	3구역	소태나무	R:40	1	주	"	"			
81	사남면 종천리, 가천리	657, 511	수목	3구역	소태나무	R:35	2	주	"	"			
82	사남면 종천리, 가천리	657, 511	수목	3구역	굴피나무	R:35	1	주	"	"			
83	사남면 종천리, 가천리	657, 511	수목	3구역	소태나무	R:25	2	주	"	"			
84	사남면 종천리, 가천리	657, 511	수목	3구역	소태나무	R:25	1	주	"	"			
85	사남면 종천리, 가천리	657, 511	수목	3구역	고욤나무	R:20	1	주	"	"			
86	사남면 종천리, 가천리	657, 511	수목	3구역	이팝나무	R:20	1	주	"	"			
87	사남면 종천리, 가천리	657, 511	수목	3구역	벚나무	R:60	1	주	"	"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유형	구분	물건의류	구조및규격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88	사남면 종천리, 가천리	657, 511	수목	3 구역	벗나무	R:60	3	주	김*권	사천시 사남면* 사남로*			
89	사남면 종천리, 가천리	657, 511	수목	3 구역	벗나무	R:50	4	주	"	"			
90	사남면 종천리, 가천리	657, 511	수목	3 구역	벗나무	R:40	6	주	"	"			
91	사남면 종천리, 가천리	657, 511	수목	3 구역	벗나무	R:25	1	주	"	"			
92	사남면 종천리, 가천리	657, 511	수목	3 구역	은행나무	R:40	8	주	"	"			
93	사남면 종천리, 가천리	657, 511	수목	3 구역	은행나무	R:30	9	주	"	"			
94	사남면 종천리, 가천리	657, 511	수목	3 구역	주목	W:2.5,H:1 .3	1	주	"	"			
95	사남면 종천리, 가천리	657, 511	수목	3 구역	연산홍	W:0.5~1 (양어장)	50	주	"	"			
96	사남면 종천리, 가천리	675, 511	수목	3 구역	복숭아	R:20	1	주	"	"			
97	사남면 종천리	617	공작물	3 구역	천막 (금1번)	철파이프 천막지붕 (7.3*2.5)	1	식	최*순	사천시 사남면* 사남로*			
98	사남면 종천리	617	공작물	3 구역	천막 (금1번)	수동개폐 장치	1	식	"	"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유형	구분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99	사남면 중천리	617	공작물	3 구역	평상 (숯1번)	철제 (9*3.7)	1	식	최*순	사천시 사남면로 사남*			
100	사남면 중천리	617	공작물	3 구역	천막 (숯2번)	철파이프 천막지붕 (8*2.7)	1	식	"	"			
101	사남면 중천리	617	공작물	3 구역	천막 (숯2번)	수동개폐 장치	1	식	"	"			
102	사남면 중천리	617	공작물	3 구역	평상 (숯2번)	목조 (7.6*2.5)	1	식	"	"			
103	사남면 중천리	617	공작물	3 구역	천막 (숯3번)	철파이프 천막지붕 (8*2.5)	1	식	"	"			
104	사남면 중천리	617	공작물	3 구역	평상 (숯3번)	목조 (7.6*2.5)	1	식	"	"			
105	사남면 중천리	617	공작물		천막 (숯4번)	철파이프 천막지붕 (8.4*4.0)	1	식	"	"			
106	사남면 중천리	617	공작물	3 구역	천막 (숯4번)	수동개폐 장치	2	식	"	"			
107	사남면 중천리	617	공작물	3 구역	평상 (NO:30~ 34)	철제	5	식	"	"			
108	사남면 중천리	617	수목	3 구역	팽나무	R:50~60	4	주	"	"			
109	사남면 중천리	617	수목	3 구역	팽나무	R:50	3	주	"	"			
110	사남면 중천리	617	수목	3 구역	팽나무	R:40	1	주	"	"			
111	사남면 중천리	617	수목	3 구역	팽나무	R:30	3	주	"	"			
112	사남면 중천리	617	수목	3 구역	은행나무	R:40	3	주	"	"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유형	구분	물건의류	구조및규격	수량(면적)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113	사남면 종천리	617	수목	3 구역	은행나무	R:30	3	주	최*순	사천시 사남면로 *			
114	사남면 종천리	617	수목	3 구역	소태나무	R:50	1	주	"	"			
115	사남면 종천리	617	수목	3 구역	고욤나무	R:30	1	주	"	"			
116	사남면 가천리, 우천리	511, 1446-65	공작물	4 구역	매표소	판넬조 (2.5*2.5)	1	식	김*권	사천시 사남면로 *			
117	사남면 가천리, 우천리	511, 1446-65	공작물	4 구역	조명시설		4	식	"	"			
118	사남면 가천리, 우천리	511, 1446-65	공작물	4 구역	조경석	자연석 H:1.5	1	식	"	"			
119	사남면 가천리, 우천리	511, 1446-65	수목	4 구역	자목련	H:1.5	1	주	"	"			
120	사남면 가천리, 우천리	511, 1446-65	수목	4 구역	산다래나 무		2	주	최*순	사천시 사남면로 *			
121	사남면 가천리, 우천리	511, 1446-65	수목	4 구역	덩쿨나무		1	주	"	"			
122	사남면 가천리, 우천리	511, 1446-65	공작물	4 구역	지지대	철파이프	1	식	"	"			
123	사남면 가천리, 우천리	511, 1446-65	공작물	4 구역	간판	지주식 (3*0.6)	1	식	김*권	사천시 사남면로 *			
124	사남면 가천리, 우천리	511, 1446-65	공작물	4 구역	식수대	조적조 슬라브	8.64	m <sup>2</sup>	최*순	사천시 사남면로 *			
125	사남면 가천리, 우천리	511, 1446-65	공작물	4 구역	화단1	자연석(10 *2) (야생화포 합)	20	m <sup>2</sup>	"	"			
126	사남면 가천리, 우천리	511, 1446-65	수목	4 구역	화살나무	W:3,H:2.5	1	주	"	"			
127	사남면 가천리, 우천리	511, 1446-65	수목	4 구역	으름나무	W:3	1	주	"	"			
128	사남면 가천리, 우천리	511, 1446-65	공작물	4 구역	지지대2	철파이프	1	식	"	"			
129	사남면 가천리, 우천리	511, 1446-65	수목	4 구역	장미	H:1	1		"	"			
130	사남면 가천리, 우천리	511, 1446-65	공작물	4 구역	화단2	페타이어	27.00	m <sup>2</sup>	"	"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유형	구분	물건의류 중	구조및 규격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소유자	주 소	성명	주소	
131	사남면 가천리, 우천리	511, 1446-65	수목	4 구역	향나무	R:25~30	6	주	"	"			
132	사남면 가천리, 우천리	511, 1446-65	수목	4 구역	산초나무	H:1	1	주	"	"			
133	사남면 가천리, 우천리	511, 1446-65	수목	4 구역	단풍나무	H:1.5	4	주	"	"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유형	구분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134	사남면 가천리, 우천리	511, 1446-65	수목	4구역	홍단풍	H:1	1	주	최*순	사천시 사남면 사남로 *			
135	사남면 가천리, 우천리	511, 1446-65	수목	4구역	가사오 가피	H:1.5	1	주	"	"			
136	사남면 가천리, 우천리	511, 1446-65	수목	4구역	수국	H:1.5	1	주	"	"			
137	사남면 가천리, 우천리	511, 1446-65	수목	4구역	소나무	H:2	1	주	"	"			
138	사남면 가천리, 우천리	511, 1446-65	수목	4구역	범발톱	H:1	1	주	"	"			
139	사남면 가천리, 우천리	511, 1446-65	수목	4구역	싸리꽃 나무	H:1	1	주	"	"			
140	사남면 가천리, 우천리	511, 1446-65	수목	4구역	으름나 무		1	주	"	"			
141	사남면 가천리, 우천리	511, 1446-65	공작물	4구역	지지대3	철파이 프	1	식	"	"			
142	사남면 가천리, 우천리	511, 1446-65	수목	4구역	연산홍	W:0.3	30	주	"	"			
143	사남면 가천리, 우천리	511, 1446-65	수목	4구역	앵두나 무	H:3	2	주	"	"			
144	사남면 가천리, 우천리	511, 1446-65	수목	4구역	느티나 무	R:40~50	4	주	김*권	사천시 사남면 사남로 *			
145	사남면 가천리, 우천리	511, 1446-65	수목	4구역	느티나 무	R:35	2	주	"	"			
146	사남면 가천리, 우천리	511, 1446-65	수목	4구역	목련나 무	R:35	2	주	"	"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유형	구분	물건의류	구조및규격	수량(면적)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147	사남면 가천리, 우천리	511, 1446-65	수목	4구역	벚나무	R:35~40	4	주	김*권	사천시 사남면 사남로 *			
148	사남면 가천리, 우천리	511, 1446-65	수목	4구역	벚나무	R:20	1	주	"	"			
149	사남면 가천리, 우천리	511, 1446-65	수목	4구역	벚나무	R:25	1	주	"	"			
150	사남면 가천리, 우천리	511, 1446-65	수목	4구역	모과나무	R:25	1	주	"	"			
151	사남면 가천리, 우천리	511, 1446-65	수목	4구역	물푸레나 무	R:60	2	주	"	"			
152	사남면 가천리, 우천리	511, 1446-65	수목	4구역	노르웨이 단풍	R:35	1	주	"	"			
153	사남면 가천리, 우천리	511, 1446-65	수목	4구역	단풍나무	R:25~30	3	주	"	"			
154	사남면 가천리, 우천리	511, 1446-65	수목	4구역	으름나무		1	주	최*순	사천시 사남면 사남로 *			
155	사남면, 중천리, 가천리, 우천리	617, 511,657 1446-65	공작물	1구역 ~ 4구역	바닥	세석 (25t)	40	대	김*권	사천시 사남면 사남로 *			

※ 상남권역 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서는 사천시청 도시재생과(055-831-3240)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055-851-8146)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사천시 고시 제2020-242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실시계획 변경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 07. 02.

##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허가번호(허가일자) : 제2020-2호 (2020.03.24.)
2.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가. 성 명 : (주)상희토건
  - 나. 주 소 :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882, 3층 303호
3. 점용·사용의 목적(공사내용)
  - 사천 예수화전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공사의 토공사중 사토운반을 위한 물량장 설치
4. 점용·사용의 장소(공사장소)
  -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1122번지선 공유수면
5.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 승인사항
  - 기존 :
    - \* 승인번호 : 제2020-3호 (2020.05.14.)
    - \* 공사기간 : 2020.05. ~ 2020.05.
    - \* 공사내용 : 피복석설치(A=41㎡), 상치콘크리트(A=150㎡)
  - 변경 :
    - \* 승인번호 : 제2020-5호 (2020.06.29.)
    - \* 공사기간 : 2020.05. ~ 2020.07.31.
    - \* 공사내용 : 피복석설치(A=99㎡), 상치콘크리트(A=232㎡)
6.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 승인일자 : 2020.06.29.
7.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조건
  - 점용·사용 허가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실시계획 승인증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사천시 공고 제2020-845호

## 어업면허 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의한 어업면허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 사 천 시 장

### □ 어업면허 내역

면허번호	어업종류 (양식방법)	어장 위치	면적 (ha)	어업 시기	면허 유효기간	면허일자	어업권자		제한조건	비고
							주 소	성 명		
사천 제13호	협동양식	사천 실안	20.00	1.1. ~ 12.31	'20.07.01. ~ '30.06.30.	'20.06.30.	경남 사천시 실안동	실안어촌계	수산관계 법령준수	사천 협동양식 제6호 재개발

※ 어장의 위치 및 구역도 : 사천시 해양수산과 비치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사천시 공고 제2020-855호

「사천시 사무위임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시장의 권한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권한과 책임있는 행정수행 기반을 확립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에 관한 업무 정비(안 별표 1)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 나. 통계법에 따른 총조사 등 통계에 관한 업무 정비(안 별표 1)
- 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이용실태 조사 등 관련 업무 정비(안 별표 1)
- 라. 그 외 위임사무와 근거 및 적용법규 등 정비

## 3. 의견 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천시장(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번호 : 055-831-2565, FAX : 055-831-6021)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현행]  
[별표 1]

## 읍·면·동 권한 위임사무

연번	위임 사무명	근거 및 적용 법규	비고
1	소속직원의 휴가, 사사여행 및 청원 신고 처리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제19조	
2	소속직원의 사무 인계·인수	「사천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제7조	
3	소속직원의 근무지정 (부 읍·면장 제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4	소속직원의 출장명령	「사천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제6조	
5	소속직원의 출장복명서 처리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8조	
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7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8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	「의료급여법」 제8조제1항	
9	매장, 화장 및 개장신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10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지방자치법」 제9조, 「의료급여법」 제8조제2항	
11	주민등록사무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증 발급 2.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3. 위반자에 대한 조치 4.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도 가능)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주민등록법」 제24조 「주민등록법」 제30조 「주민등록법」 제40조 「주민등록법」 제29조	
12	주민세 균등할 자료조사 (동 제외)	「사천시세조례」 제10조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연번	위임 사무명	근거 및 적용 법규	비 고
13	사업소세 자료조사(동 제외)	「사천시세조례」 제10조	
14	시세관련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따른 자료조사(동 제외)	「사천시세조례」 제10조	
15	재산세(토지,건물,주택)과세자료조사(동 제외)	「사천시세조례」 제10조	
16	시세관련 각종 대장작성 및 정비(동 제외)	「사천시세조례」 제10조	
17	시세의 납세고지서와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교부	「사천시세조례」 제10조	
18	시세 및 가산금의 수납,체납처분(동 제외)	「사천시세조례」 제10조	
19	시세관련 납세(과세,미과세,징수유예)증명	「사천시세조례」 제10조	
20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동 제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영 제5조 부터 영 제8조	
21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동 제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22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신고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동 제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	
23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신고에 따른 수수료 징수(동 제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7조	
24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신고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동 제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	
25	불법·불량 옥외광고물의 정비 단속(동 제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32조	
26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동 제외)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부터 제52조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8항	
27	농지전용신고(동 제외)	「농지법」 제37조	
28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읍면 제외)	「지방자치법」 제9조, 같은법 제104조, 「농지법」 제8조제1항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개정안]  
[별표 1]

## 읍·면·동 권한 위임사무

연번	위임 사무명	근거 및 적용 법규	비고
1	소속직원의 근무지정	「지방공무원법」 제6조	
2	소속직원의 사무 인계·인수	「사천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제7조	
3	소속직원의 출장명령, 복명서 처리	「사천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제6조,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	
4	소속직원의 당직명령	「사천시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규칙」 제7조	
5	소속직원의 휴가, 사사여행 및 청원 신고 처리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제19조	
6	기록물 등록·분류·보관 등 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7	적십자 회비납부용지 배부 및 모금 홍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9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10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	「의료급여법」 제8조제1항	
11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의료급여법」 제8조제2항	
12	매장, 화장 및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연번	위임 사무명	근거 및 적용 법규	비고
13	장애인 등록(취소) 및 등급조정(재판정), 신청,접수,상담 및 장애진단 의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제32조의2, 제3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의2	
14	장애상태 확인 및 장애등급 결과 통보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제32조의2, 제3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15	장애인복지카드 교부(재교부) 및 반환, 기재사항 변경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제32조의2, 제3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8조	
16	장애인등록 현황의 기록 및 관리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17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및 관리	「장애인복지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18	장애인증명서 발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19	주민세(균등분) 자료조사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20	주민세(재산분) 자료조사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21	시세관련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따른 자료조사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22	재산세(토지,건물,주택) 및 자동차세 등 과세자료 조사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23	시세의 납세고지서와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교부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24	시세 체납액 납부 독려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25	시세관련 납세 (과세, 미과세, 징수유예)증명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연번	위임 사무명	근거 및 적용 법규	비고
26	주민등록사무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 제2조  「주민등록법」 제30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	
27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 (동 제외)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부터 제52조, 제77조제8항	
28	통계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총조사  ②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  ③ 인구동향조사	「통계법」 제5조의3  「통계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통계법」 제17조 「인구동향조사 규칙」 제7조, 제8조, 제9조	
29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동 제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30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 (동 제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31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신고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동 제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연번	위임 사무명	근거 및 적용 법규	비고
32	<p>농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1. 농지전용신고(동 제외)</p> <p>2.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p> <p>3. 농지이용실태조사</p> <p>4.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및 관리</p> <p>5.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교부</p> <p>6. 자경증명의 발급</p>	<p>「농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p> <p>「농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p> <p>「농지법」 제10조, 제49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p> <p>「농지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 제57조</p> <p>「농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p> <p>「농지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p>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 관 련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사천시 공고 제2020-858호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7월 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사천바다 케이블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행시간을 조정하고 이용료 할인 및 이용료 반환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운행시간 조정(안 제5조)

나. 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이용요금 할인근거 마련(안 제12조)

다. 이용료 반환 근거 마련(안 제13조)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관광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관광진흥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785, FAX : 831-6024)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절기(3월~11월): 09:00 ~ 22:00
2. 동절기(12월~2월): 09:00 ~ 20:00

제12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제13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3. 이용자가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않은 탑승권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당일 영업시간 내로 한정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제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용자가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해 일부 사용된 탑승권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당일 영업시간 내로 한정한다)에는 이용권의 차액을 반환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운행시간) ① 케이블카의 운행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하절기(3월~10월): 09:00 ~ 18:00</p> <p>2. 동절기(11월~2월): 09:00 ~ 17:00</p> <p>② (생략)</p> <p>제12조(이용료의 할인) (생략)</p> <p>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별표 3에 따라 할인 이용료를 적용한다. 다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1. ~ 10. (생략)</p> <p><u>&lt;신 설&gt;</u></p> <p>11. (생략)</p> <p>②·③ (생략)</p> <p>제13조(이용료의 반환) <u>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환한다.</u></p> <p>1. ~ 2. (생략)</p>	<p>제5조(운행시간) ① ----- -----.</p> <p>1. 하절기(3월~11월): 09:00 ~ 22:00</p> <p>2. 동절기(12월~2월): 09:00 ~ 20:00</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이용료의 할인) (현행과 같음)</p> <p>① ----- ----- -----.</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u>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u></p> <p>12. (현행 제11호와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3조(이용료의 반환)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u></p> <p>1. ~ 2. (현행과 같음)</p>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3. (생 략)</p> <p><u>&lt;신 설&gt;</u></p>	<p>3. <u>이용자가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않은 탑승권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당일 영업시간 내로 한정한다)</u></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② <u>이용자가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해 일부 사용된 탑승권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당일 영업시간 내로 한정한다)에는 사용된 이용권의 차액을 반환한다.</u></p>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현 행>

[별표 3]

##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할인 이용료(제12조 관련)

구 분		왕복요금	편도요금	비 고
사천시민	대인	10,000원	-	1명 요금
	소인	7,000원	-	1명 요금
국가보훈대상자		12,000원	-	1명 요금
장애인		12,000원	-	1명 요금
경로우대자		13,000원	-	1명 요금

- ※ 1. 이용료 할인은 일반캐빈 왕복요금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사천시민은 사천시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3.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이용료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4. 국가보훈대상자란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용료 할인은 중복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6.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개정안>

[별표 3]

##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할인 이용료(제12조 관련)

구 분		왕복요금	편도요금	비 고
사천시민,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대인	10,000원	-	1명 요금
	소인	7,000원	-	1명 요금
국가보훈대상자		12,000원	-	1명 요금
장애인		12,000원	-	1명 요금
경로우대자		13,000원	-	1명 요금

- ※ 1. 이용료 할인은 일반캐빈 왕복요금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사천시민은 사천시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3.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전북 정읍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남 의령군에 주민 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이용료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5. 국가보훈대상자란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용료 할인은 중복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7.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 관 련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사천시 공고 제2020-859호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사천시 관광객 확보를 위한 시설 이용요금을 인하하고 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의 요금 할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캠핑장 시설 이용료를 인하하고, 단체글램핑의 사용 인원 조정 및 추가 요금 부과 기준 명시(안 제6조 관련 별표 2)
- 다자녀가정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이용요금 감액 삭제 등(안 제7조 관련 별표 3)
  - 다자녀가정 및 다문화 가족은 시민과 동일한 감액을 적용 대상이므로 중복된 감액 규정 삭제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에게 사천시민 할인 요금 적용

○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명시화(안 제8조 관련 별표 4)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관광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관광진흥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785, FAX : 831-6024)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현 행>

[별표 2]

## 사천시 캠핑장 시설이용료(제6조 관련)

□ 캠핑장 이용료

구 분		이용시간	요 금 (원)			비 고
명칭	크 기		비수기(성수기제외)		성수기 (7월~8월)	
			주중	주말		
카라반 (스토리아하우스)	6m×8m (4인용)	1동/1일	150,000	200,000	230,000	전기이용료 포함
글램핑	6m×8m (4인용)	1동/1일	100,000	150,000	180,000	
단체글램핑	12m×9m (20~30인용)	1동/1일	300,000	400,000	450,000	
일반야영	6m×8m	1면/1일	25,000	30,000	35,000	
평 상	2.4m×2.4m	1개소/1일	15,000	20,000	25,000	전기이용 불가

□ 주차장 이용료 : 연중 무료

□ 이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 주중 : 일요일 ~ 목요일, 연휴 마지막 날
- 주말 : 금, 토요일, 법정 공휴일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날)
- 성수기 : 7월 1일 ~ 8월 31일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캠핑장 이용시간(1일) : 당일 14:00 ~ 다음 날 11:00(캠핑장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퇴실시간 초과 시 (예약자가 있는 경우 연장불가)
  - 카라반 : 시간당 10,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글램핑장 : 시간당 5,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일반캠핑 : 시간당 2,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평상 : 시간당 1,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계산
- 카라반(스토리아하우스), 글램핑장, 일반야영장은 4인 기준이며, 1인추가시 1일당 10,000원의 추가요금을 징수합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개정안>

[별표 2]

## 사천시 캠핑장 시설이용료(제6조 관련)

### □ 캠핑장 이용료

구 분		이용시간	요 금 (원)			비 고
명칭	크 기		비수기(성수기제외)		성수기 (7월~8월)	
			주중	주말		
카라반 (스토리아하우스)	6m×8m (4인용)	1동/1일	100,000	150,000	200,000	전기이용료 포 함
글램핑	6m×8m (4인용)	1동/1일	80,000	110,000	150,000	
단체글램핑	12m×9m (16인용)	1동/1일	240,000	360,000	400,000	
일반야영	6m×8m (4인용)	1면/1일	25,000	30,000	35,000	전기이용 불 가
평 상	2.4m×2.4m	1개소/1일	15,000	20,000	25,000	

### □ 주차장 이용료 : 연중 무료

### □ 이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 주 중 : 일요일 ~ 목요일, 연휴 마지막 날
- 주 말 : 금, 토요일, 법정 공휴일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날)
- 성수기 : 7월 1일 ~ 8월 31일(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캠핑장 이용시간(1일) : 당일 14:00 ~ 다음 날 11:00(캠핑장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퇴실시간 초과 시(예약자가 있는 경우 연장불가)
  - 카라반 : 시간당 10,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글램핑 : 시간당 5,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단체글램핑 : 시간당 20,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일반야영 : 시간당 2,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평상 : 시간당 1,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계산
- 카라반(스토리아하우스), 글램핑, 단체글램핑, 일반야영장은 1명 추가 시 1일당 10,000원의 추가요금을 징수합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현 행>  
[별표 3]

## 사천시 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율(제7조 관련)

감면대상	대상기간	성수기	비수기	비고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사람		20%	20%	카라반(스토리하우스), 글램핑, 단체글램핑, 일박야영, 평상의 이용료에 한함
2. 사천시 다자녀 가정 (1가정 1실에 한함)		-	20%	
3.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	
4. 국가보훈대상자		-	20%	
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0%	
6.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		-	20%	
7. 다문화가족 구성원		-	20%	

※ 비 고

- 이용료 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천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사천시 다자녀 가정의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발급 6개월 미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천시 다자녀 가정이란 주민등록상 주소가 사천시로 되어 있고,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말한다.
-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란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말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개정안>

[별표 3]

## 사천시 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율(제7조 관련)

감면대상	대상기간	성수기	비수기	비고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사람		20%	20%	카라반(스토리 하우스), 글램핑, 단체글램핑, 일반야영, 평상의 이용료에 한함
2.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	
3. 국가보훈대상자		-	20%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0%	
5.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		-	20%	
6. <u>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u>		<u>20%</u>	<u>20%</u>	

※ 비 고

- 이용료 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천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말한다.
-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전북 정읍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남 의령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현 행>

[별표 4]

## 사천시 캠핑장 시설이용료 배상 및 반환기준(제8조 관련)

구 분			배상 및 반환기준	비고
주 체	시 기	유 형		
이용자 귀 책	성수기 주 중	·이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이용료의 10% 공제후 환급 ·이용료의 30% 공제후 환급 ·이용료의 50% 공제후 환급 ·이용료의 80% 공제후 환급	
		·이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이용자 귀 책	성수기 주 말	·이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이용료의 20% 공제후 환급 ·이용료의 40% 공제후 환급 ·이용료의 60% 공제후 환급 ·이용료의 90% 공제후 환급	
		·이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이용자 귀 책	비수기 주 중	·이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이용료의 10% 공제후 환급 ·이용료의 20% 공제후 환급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관리자 귀 책	성수기 주 중	·이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10% 배상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30% 배상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50% 배상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80% 배상	
		·이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3일 전 취소			
관리자 귀 책	성수기 주 말	·이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20% 배상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40% 배상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60% 배상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90% 배상	
		·이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3일 전 취소			
관리자 귀 책	비수기 주 중	·이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이용료 환급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10% 배상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20% 배상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관리자 귀 책	비수기 주 말	·이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이용료 환급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20% 배상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30% 배상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 제8조제1호의 천재지변으로 캠핑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  
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 이용자가 이용당일 이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당일 취소로 봄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개정안>

[별표 4]

## 사천시 캠핑장 시설이용료 배상 및 반환기준(제8조 관련)

구 분			배상 및 반환기준	비고
주 체	시 기	유 형		
이용자 귀 책	성수기 주 중	·이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이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이용료의 10% 공제후 환급	
	·이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이용료의 30% 공제후 환급		
	·이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이용료의 50% 공제후 환급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또는 당일 취소	·이용료의 80% 공제후 환급		
	성수기 주 말	·이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이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이용료의 20% 공제후 환급	
	비수기 주 중	·이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이용료의 40% 공제후 환급	
·이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이용료의 60% 공제후 환급		
비수기 주 말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또는 당일 취소	·이용료의 90% 공제후 환급		
	·이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관리자 귀 책	성수기 주 중	·이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이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10% 배상	
	·이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30% 배상		
	·이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50% 배상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또는 당일 취소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80% 배상		
	성수기 주 말	·이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이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20% 배상	
	비수기 주 중	·이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40% 배상	
·이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60% 배상		
비수기 주 말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또는 당일 취소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90% 배상		
	·이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이용료 환급		
비수기 주 중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10% 배상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20% 배상		
비수기 주 말	·이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이용료 환급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20% 배상		
비수기 주 말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30% 배상		

※ 제8조제1호의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캠핑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말한다.

※ 이용자가 이용당일 이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당일 취소로 봄.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 관 련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 사천시 공고 제2020-862호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수탁 업체의 자격을 완화하여 기업의 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고,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의 전부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의 전부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4조)
- 나.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수탁 업체의 자격 중 실적기간 규정 폐지(안 제8조제1항제2호)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토지관리과장)에게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청(참조 : 토지관리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820, FAX : 831-6929)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중 세입세출외현금 규정에 따라” 를  
“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5  
조부터 제85조까지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을 “공공기관” 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원인자부담)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중 <u>세입세출외현금 규정</u>에 따라 관리하고 집행한다.</p>	<p>제4조(원인자부담) ----- ----- ----- --- <u>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5조부터 제85조까지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으로</u> -----.</p>
<p>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u>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u>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p> <p>② (생 략)</p>	<p>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공공기관</u>----- -----</p> <p>② (현행과 같음)</p>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 관 련 법 규

###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5조(세입세출외현금 종류)**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등 기타(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7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한다.

④ 삭제 <2014. 11. 14.>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를 포함한다)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즉시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 ⑥ (생략)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사천시 공고 제2020-863호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년을 정한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고용된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규정 삭제(안 제10조2제4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http://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73, FAX : 831-6023)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으로 한다.

제10조의2제4항 중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5세로 한다” 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법인 설립)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한다.</p>	<p>제2조(법인 설립) ----- ----- 「민법」 제32조에 따른 -----.</p>
<p>제10조의2(사무국장) ① ~ ③ (생략) ④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5세로 한다.</u></p>	<p>제10조의2(사무국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한 차례만 연임할 있다.</u></p>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 관 련 법 규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사천시 공고 제2020-866호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정동면 공동주택의 신축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과 동서금동의 통간 관할구역을 변경함으로써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 편의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이장의 정수 개정(안 제4조 별표1)
- 나. 반장의 정수 개정(안 제6조 별표3)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66, FAX : 831-6021)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사천시 규칙 제 호

##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현행] (별표 1)

## 사천시 읍·면의 이장 정수[제4조 관련]

읍 면 별	리 명	정수	행 정 리
<b>합 계</b>		<u>236</u>	
<b>사 천 읍</b>	<b>소 계</b>	<u>39</u>	
	선인리	7	선인1리, 선인2리, 선인3리, 선인5리, 선인6리, 선인7리, 선인8리 일원
	정의리	4	정의1리, 정의2리, 정의3리, 정의5리 일원
	평화리	3	평화1리, 평화2리, 평화3리 일원
	수석리	7	수석1리, 수석2리, 수석3리, 수석5리, 수석6리, 수석7리, 수석8리 일원
	사주리	3	사주1리, 사주2리, 사주3리 일원
	용당리	2	용당1리, 용당2리 일원
	구암리	5	구암1리, 구암2리, 구암3리, 구암5리, 구암6리 일원
	장전리	2	장전1리, 장전2리 일원
	금곡리	1	금곡리 일원
	두량리	5	두량1리, 두량2리, 두량3리, 두량5리, 두량6리 일원
<b>정 동 면</b>	<b>소 계</b>	<u>30</u>	
	고읍리	9	고읍, 동계1리, 동계2리, 동계3리, 동계5리, 동계6리, 동계7리, 동계8리, 동계9리 일원
	예수리	<u>3</u>	예수, 반응, 영광 일원
	화암리	2	화암, 여옥 일원
	풍정리	5	풍정1리, 풍정2리, 풍정3리, 풍정5리, 풍정6리 일원
	수청리	1	수청 일원
	대곡리	1	대곡 일원
	장산리	2	노천, 대산 일원
	감곡리	2	복상, 감곡 일원
	학촌리	2	만마, 학촌 일원
	소곡리	3	소곡, 가곡, 객방 일원
<b>사 남 면</b>	<b>소 계</b>	<u>42</u>	
	죽천리	3	죽천, 상죽, 용두 일원
	초전리	1	초전 일원
	방지리	1	방지 일원
	유천리	4	유천, 유천2, 유천3, 하동 일원
	월성리	17	월성1리, 월성2리, 월성3리, 월성5리, 월성6리, 월성7리, 월성8리, 월성9리, 월성10리, 월성11리, 월성12리, 월성13리, 월성14리, 곡성, 조동, 월성15리, 월성16리
	화전리	5	도동, 병둔, 화전, 예의, 구룡 일원
	우천리	3	우천, 능화, 연천 일원
	가천리	1	가천 일원
	종천리	2	종천, 소산 일원
	사촌리	3	사촌, 대산, 송암 일원
	계양리	2	계양, 진분계 일원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읍 면 별	리 명	정수	행 정 리
용 현 면	소 계	31	
	선 진 리	3	선진, 연호, 신기 일원
	통 양 리	1	통양 일원
	신 촌 리	2	신촌, 종포 일원
	신 북 리	7	신북, 평기, 신영, 동강1리, 동강2리, 동강3리, 동강5리 일원
	온 정 리	2	온정, 용정 일원
	석 계 리	1	석계 일원
	구 월 리	2	구월, 금구 일원
	용 치 리	1	용치 일원
	송 지 리	5	송지1리, 송지2리, 장송, 신송, 평송 일원
	금 문 리	1	금문 일원
	주 문 리	2	주문, 신평 일원
	덕 곡 리	4	덕곡1리, 덕곡2리, 덕곡, 부곡 일원
축 동 면	소 계	17	
	길 평 리	0	
	배 춘 리	5	신기, 양동, 배춘, 운계, 길평 일원
	사 다 리	2	사다, 예동 일원
	탑 리	3	상탑, 중탑, 하탑 일원
	반 용 리	3	신촌, 관동, 반룡 일원
	가 산 리	3	용산, 용수, 가산 일원
	구 호 리	1	구호 일원
곤 양 면	소 계	30	
	성 내 리	2	삼동, 수동 일원
	남문외리	2	옥곡, 남문 일원
	서 정 리	4	후전, 사동, 상정, 우티 일원
	무 고 리	2	무고, 상평 일원
	맥 사 리	1	맥사 일원
	송 전 리	3	송전, 포곡, 당천 일원
	대 진 리	4	석문, 한월, 제민, 어류 일원
	환 덕 리	3	본촌, 환덕, 고동포 일원
	목 곡 리	3	목단, 목실, 동천 일원
	흥 사 리	1	흥사 일원
	가 화 리	1	가화 일원
	검 정 리	1	검정 일원
중 향 리	3	와티, 안도, 점복개 일원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읍 면 별	리 명	정수	행 정 리
곤 명 면	소 계	25	
	추 천 리	3	오사, 추동, 신산 일원
	용 산 리	1	용산 일원
	조 장 리	1	조장 일원
	봉 계 리	2	원전, 오저 일원
	초 량 리	1	초량 일원
	삼 정 리	1	삼정 일원
	은 사 리	2	은사, 옥동 일원
	마 곡 리	1	마곡 일원
	송 립 리	1	송림 일원
	성 방 리	1	성방 일원
	작 팔 리	2	작팔, 구물 일원
	신 흥 리	2	만지, 고월 일원
	정 곡 리	2	완사, 신기 일원
	본 촌 리	2	본촌, 양월 일원
	금 성 리	2	금성(구. 두인 포함), 장신 일원
	연 평 리	1	연평 일원
서 포 면	소 계	22	
	금 진 리	2	금진, 후포 일원
	내 구 리	3	내구, 굴포, 신흥 일원
	외 구 리	3	서구, 동구, 남구 일원
	조 도 리	1	조도 일원
	구 량 리	2	구량, 조교 일원
	자 해 리	2	중촌, 구포 일원
	구 평 리	3	구평, 통정, 대포 일원
	선 전 리	3	선창, 염전, 아포 일원
	비 토 리	1	비토 일원
	다 평 리	2	다맥, 신소 일원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개정안] (별표 1)

## 사천시 읍·면의 이장 정수[제4조 관련]

읍 면 별	리 명	정수	행 정 리
<b>합 계</b>		<u>239</u>	
<b>사 천 읍</b>	<b>소 계</b>	<u>39</u>	
	선 인 리	7	선인1리, 선인2리, 선인3리, 선인5리, 선인6리, 선인7리, 선인8리 일원
	정 의 리	4	정의1리, 정의2리, 정의3리 정의5리 일원
	평 화 리	3	평화1리, 평화2리, 평화3리 일원
	수 석 리	7	수석1리, 수석2리, 수석3리, 수석5리, 수석6리, 수석7리, 수석8리 일원
	사 주 리	3	사주1리, 사주2리, 사주3리 일원
	용 당 리	2	용당1리, 용당2리 일원
	구 암 리	5	구암1리, 구암2리, 구암3리, 구암5리, 구암6리 일원
	장 전 리	2	장전1리, 장전2리 일원
	금 곡 리	1	금곡리 일원
	두 량 리	5	두량1리, 두량2리, 두량3리, 두량5리, 두량6리 일원
<b>정 동 면</b>	<b>소 계</b>	<u>33</u>	
	고 읍 리	9	고읍, 동계1리, 동계2리, 동계3리, 동계5리, 동계6리, 동계7리, 동계8리, 동계9리 일원
	예 수 리	<u>6</u>	예수1, 반용, 예수2, 예수3, 예수5, 예수6 일원
	화 암 리	2	화암, 여옥 일원
	풍 정 리	5	풍정1리, 풍정2리, 풍정3리, 풍정5리, 풍정6리 일원
	수 청 리	1	수청 일원
	대 곡 리	1	대곡 일원
	장 산 리	2	노천, 대산 일원
	감 곡 리	2	복상, 감곡 일원
	학 촌 리	2	만마, 학촌 일원
	소 곡 리	3	소곡, 가곡, 객방 일원
<b>사 남 면</b>	<b>소 계</b>	<u>42</u>	
	죽 천 리	3	죽천, 상죽, 용두 일원
	초 전 리	1	초전 일원
	방 지 리	1	방지 일원
	유 천 리	4	유천, 유천2, 유천3, 하동 일원
	월 성 리	17	월성1리, 월성2리, 월성3리, 월성5리, 월성6리, 월성7리, 월성8리, 월성9리, 월성10리, 월성11리, 월성12리, 월성13리, 월성14리, 곡성, 조동, 월성15리, 월성16리
	화 전 리	5	도동, 병둔, 화전, 예의, 구룡 일원
	우 천 리	3	우천, 능화, 연천 일원
	가 천 리	1	가천 일원
	종 천 리	2	종천, 소산 일원
	사 촌 리	3	사촌, 대산, 송암 일원
계 양 리	2	계양, 진분계 일원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읍 면 별	리 명	정수	행 정 리
용 현 면	소 계	31	
	선 진 리	3	선진, 연호, 신기 일원
	통 양 리	1	통양 일원
	신 촌 리	2	신촌, 종포 일원
	신 복 리	7	신복, 평기, 신영, 동강1리, 동강2리, 동강3리, 동강5리 일원
	온 정 리	2	온정, 용정 일원
	석 계 리	1	석계 일원
	구 월 리	2	구월, 금구 일원
	용 치 리	1	용치 일원
	송 지 리	5	송지1리, 송지2리, 장송, 신송, 평송 일원
	금 문 리	1	금문 일원
	주 문 리	2	주문, 신평 일원
	덕 곡 리	4	덕곡1리, 덕곡2리, 덕곡, 부곡 일원
축 동 면	소 계	17	
	길 평 리	0	
	배 춘 리	5	신기, 양동, 배춘, 운계, 길평 일원
	사 다 리	2	사다, 예동 일원
	탑 리	3	상탑, 중탑, 하탑 일원
	반 용 리	3	신촌, 관동, 반룡 일원
	가 산 리	3	용산, 용수, 가산 일원
	구 호 리	1	구호 일원
곤 양 면	소 계	30	
	성 내 리	2	삼동, 수동 일원
	남문외리	2	옥곡, 남문 일원
	서 정 리	4	후전, 사동, 상정, 우티 일원
	무 고 리	2	무고, 상평 일원
	맥 사 리	1	맥사 일원
	송 전 리	3	송전, 포곡, 당천 일원
	대 진 리	4	석문, 한월, 제민, 어류 일원
	환 덕 리	3	본촌, 환덕, 고동포 일원
	목 곡 리	3	목단, 목실, 동천 일원
	흥 사 리	1	흥사 일원
	가 화 리	1	가화 일원
	검 정 리	1	검정 일원
중 향 리	3	와티, 안도, 점복개 일원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읍 면 별	리 명	정수	행 정 리
곤 명 면	소 계	25	
	추 천 리	3	오사, 추동, 신산 일원
	용 산 리	1	용산 일원
	조 장 리	1	조장 일원
	봉 계 리	2	원전, 오저 일원
	초 량 리	1	초량 일원
	삼 정 리	1	삼정 일원
	은 사 리	2	은사, 옥동 일원
	마 곡 리	1	마곡 일원
	송 림 리	1	송림 일원
	성 방 리	1	성방 일원
	작 팔 리	2	작팔, 구몰 일원
	신 흥 리	2	만지, 고월 일원
	정 곡 리	2	완사, 신기 일원
	본 촌 리	2	본촌, 양월 일원
	금 성 리	2	금성(구. 두인 포함), 장신 일원
연 평 리	1	연평 일원	
서 포 면	소 계	22	
	금 진 리	2	금진, 후포 일원
	내 구 리	3	내구, 굴포, 신흥 일원
	외 구 리	3	서구, 동구, 남구 일원
	조 도 리	1	조도 일원
	구 량 리	2	구량, 조교 일원
	자 해 리	2	중촌, 구포 일원
	구 평 리	3	구평, 통정, 대포 일원
	선 전 리	3	선창, 염전, 아포 일원
	비 토 리	1	비토 일원
	다 평 리	2	다맥, 신소 일원

# 사 천 시 공 보

제 674 호

[현행] (별표 3)

사천시 읍·면·동 반장 정수 [제6조 관련]

읍면동	정 수
합 계	<u>1,534</u>
사천읍	212
<u>정동면</u>	<u>124</u>
사남면	123
용현면	91
축동면	28
곤양면	67
곤명면	67
서포면	66
동서동	158
선구동	110
<u>동서금동</u>	<u>111</u>
벌용동	211
향촌동	81
남양동	85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개정안] (별표 3)

사천시 읍·면·동 반장 정수 [제6조 관련]

읍면동	정 수
합 계	1,560
사천읍	212
<u>정동면</u>	<u>151</u>
사남면	123
용현면	91
축동면	28
곤양면	67
곤명면	67
서포면	66
동서동	158
선구동	110
<u>동서금동</u>	<u>110</u>
벌용동	211
향촌동	81
남양동	85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 관 련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의 임명)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 사 천 시 공 보

제674호

② 제1항에 따른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이·통장의 임명 등) 이·통장의 임명 및 정수, 행정리·통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반장의 임명과 정수) 반장의 임명과 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